

첨부(1) 「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(고시)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

| 개정안 | 협회(안) | 사유 |
|--|--|--|
| <p>제27조(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) ① <u>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-- 사항을</u>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시설물관리계획</u></p> <p>6. <u>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이력</u></p> <p>7. <u>중대한 결함 이력</u></p> <p>8. <u>긴급안전조치 현황</u></p> <p>9. <u>안전점검등·성능평가·유지관리 이력</u></p> <p>10. <u>시설물 제원</u></p> <p>② <u>운영기관의 장</u>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하며,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공개한다.</p> | <p>제27조(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) ① <u>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-- 사항을</u>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시설물관리계획</u></p> <p>6. <u>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이력</u></p> <p>7. <u>중대한 결함 이력</u></p> <p>8. <u>긴급안전조치 현황</u></p> <p>9. <u>안전점검등·성능평가·유지관리 이력</u></p> <p>10. <u>시설물 제원</u></p> <p>② <u>운영기관의 장</u>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실적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하며,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공개한다.</p> | <p>1.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와 법령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.</p> <p>2. 용역 공동수급자 간의 정보 확인으로 입찰시 참고 확인.</p> |